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44
----------	------

제출연월일 : 2016. 1.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 1. 제안이유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중 공단 임원 및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과 상충하는 내용을 정비하고, 「민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임원 정수 관련 사항 삭제(안 제7조)

1)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공단 임원의 수는 정관으로 정함

나. 당연직 이사 변경 (안 제9조)

1)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행정자치부)에 따라 당연직 이사는 비상임이사의 1/3이하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1명 이내로 조정함

다. 임원결격사유 변경 (안 제11조)

1) 민법 개정에 따라 기존 한정치산자·금치산자제도가 폐지되고 피성년후견인 등으로 제도가 신설되어 본 조례에 반영함

라. 이사회 의장 변경 (안 제15조)

1)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행정자치부)에 따라 당연직을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함

마. 비상임 임원의 겸직제한 예외 단서 신설 (안 제15조)

1) 지방공기업법 제61조제1항(임직원의 겸직제한)에서 상근이 아닌 임원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음.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常勤)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5. 11. 12 ~ 12. 2) : 별도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5)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이사장(이하“이사장”이라 한다)에 이사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를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기획재정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한다.”를 “포함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 제1항 제2호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으로 한다.

제1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비상임 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제15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한다. 다만,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u>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u>에 이사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p>	<p>제7조(임원) ----- <u>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u>----- ----- ----- -----.</p>
<p>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하고, 비상임이사는 당연직인 구의 <u>기획재정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u>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u>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한다.</u></p>	<p>제9조(이사) ① ----- ----- ----- ----- <u>기획재정국장</u>----- ----- - <u>포함하여야 한다.</u></p>
<p>② ~ ④ (생략)</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p>	<p>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 -----.</p>
<p>1. (생략)</p>	<p>1. (현행과 같음)</p>
<p>2. <u>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u></p>	<p>2. <u>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u></p>
<p>3. ~ 6. (생략)</p>	<p>3. ~ 6. (현행과 같음)</p>
<p>②·③ (생략)</p>	<p>②·③ (현행과 같음)</p>

제12조(임원 및 직원의 겸직제한) 공단  
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  
하지 못하며 임원은 구청장의, 직원  
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단서 신설>

제15조(이사회) ①·② (생략)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비상임 당연직 이사가 이  
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④ (생략)

⑤ (생략)

제12조(임원 및 직원의 겸직제한) ---

-----

-----

-----

-----

----- . 단, 비상임 임원에 대해서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이사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  
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의장  
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한다. 다만,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  
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  
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현행 제5항과 같음)